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91
----------	-------

발의연월일 : 2026. 6. 1.

발 의 자 : 김영호 · 김문수 · 이용선
민병덕 · 김준혁 · 서영교
맹성규 · 강경숙 · 김우영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제사업 및 위탁업무수행 등 교육시설 관리의 기본 체계로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수요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확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전문 시설관리 업무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

담을 경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정책환경의 종합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민·형사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범위 확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 운영평가 및 조직역량 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및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책임 특례를 신설하며, 감독기관의 장이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나.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

설).

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안전원에서 확장된 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며,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의 총회를 폐지하여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함(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등).

라.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역량 진단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교육시설의 개방 및 책임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은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의 범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교육시설지원기관)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

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2.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
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학교 시설관리업무의 부담 경감 및 지원기관의 목적 달
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를 “교육시설안전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을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원은”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시설 안전”을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교육시설”을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17.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18. 교육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19. 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업무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의”를 각각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와 총회의”를 “이사회의”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전원에는”을 “공단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및 총회”를 “이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안전원의”를 각각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이사회와 총회의”를 “이사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안전원”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이사회와 총회의”를 “이사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이사회와 총회의”를 “이사회의”로 한다.

제43조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안전원의”를 각각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조직역량 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전문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정책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진단 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진단의 시기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역량 진단 결과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중 “안전원에”를 “공단에”로, “사단법인에”를 “재단법인에”로 한다.

제47조 중 “안전원이”를 “공단이”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8조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안전원에”를 “공단에”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안전원에”를 “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를 “지정전문기관, 지원기관 또는 공단에”로 한다.

제50조제3호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54조제3항제5호 중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임직원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권리·의무는 교육시설안전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시설안전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교육시설안전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교육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5(교육시설의 개방 및 책임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은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u>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의 범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33조의2(교육시설지원기관)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u>

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
(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에 관한 업무

2.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
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의 운영·관리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
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폐
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
한 업무

5. 그 밖에 학교 시설관리업무
의 부담 경감 및 지원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3. (생략)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6장 교육시설안전공단
제35조(교육시설안전공단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② 공단은-----.

③ 공단은-----.

제36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1. ~ 13. (현행과 같음)

14.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안전-----

15.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사업	----- -
<신 설>	16. <u>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u>
<신 설>	17. <u>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u>
<신 설>	18. <u>교육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u>
<신 설>	19. <u>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업무</u>
16. (생 략)	20.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u>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	② <u>공단은</u> ----- -----.
<신 설>	③ <u>제1항제15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제37조(<u>안전원의 재정</u>) <u>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u>	제37조(<u>공단의 재정</u>) <u>공단의</u> ----- -----.
1. <u>회원이 내는 회비</u>	<삭 제>
<신 설>	2. <u>정부의 출연금·보조금</u>
<신 설>	3. <u>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u>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

제38조(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총회에 관한 사항

7. ~ 10. (생략)

11.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
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총회) ① 안전원은 이사장
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
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
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호까지와 같음)

제38조(정관) ① 공단의-----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0. (현행과 같음)

11. -----공단의-----

② -----이사의회의---

-----.

<삭제>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임원)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생략)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

제40조(임원) ① 공단에는-----

-----.

② -----

-----이사회-----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단의-----
-----.

⑤ 공단의-----

-----.

⑥ -----공단의-----

-----이사회의--

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
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생 략)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
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
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
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생 략)

제41조(이사회)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1. (생 략)

2. 안전원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 5. (생 략)

6. 총회에 제안할 사항

7. (생 략)

③ ~ ⑤ (생 략)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안전원
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안전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
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

-----.

1. (현행과 같음)

2. 공단의-----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공단-----

3.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공단의-----
-----.

② 공단은-----

-----이사회의-----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5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③ 공단은-----

-----이사회의-----

---.

제43조(준비금의 적립) 공단은---

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지도·감독) ① -----

----공단의-----

-----공단의-----

-----.

② -----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조직역량 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전문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정책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진단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진단의 시기 및 결과 보고 등

	<u>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역량 진단 결과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46조(준용) <u>안전원</u>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u>사단법인</u>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준용) <u>공단</u> 에----- ----- ----- <u>재단법인</u> 에----- -----.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u>안전원</u> 이 아닌 자는 <u>한국교육시설안전원</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u>공단</u> 이----- <u>교육시설안전공단</u> ----- -----.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u>안전원</u> 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u>안전원</u> 에 파견할	제48조(공무원의 파견) ----- ---- <u>공단의</u> ----- ----- ----- ----- ----- <u>공단에</u> -----

수 있다.

제4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제5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단에-----
-----.

③ -----

-----지정
전문기관, 지원기관 또는 공단
에-----.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

-----.

1.·2. (현행과 같음)

3. 공단의-----

제5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생 략) 5. 제47조를 위반하여 <u>한국교육</u> <u>시설안전원</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교육시설</u> <u>안전공단</u>----- ----- ④ (현행과 같음)
---	---